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0가단84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6. 15.

판 결 선 고 2021.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3. 체결된 증여계약을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8.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8. C으로부터 동두천시 D에 있는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매매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9,0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당일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G은 2017. 3. 6. 이 사건 매매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7. 4. 27.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신청되어 취소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계약금의 배액인 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은 2020. 1. 23. 원고의 청구금원 중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C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은 2021. 5. 27. ‘원고의 위 계약금 반환요구는 C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로 인하여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와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2020나202440)을 선고1) 하였다.

라. C은 2018. 4. 3.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마. C은 2020. 9. 24.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에서 선고된 금액인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8.부터의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4,998,891원을 변제공탁(의정부지방법원 2020년 금제6805호, 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은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보이고, 채무자인 C이 이 사건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피보전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변제공탁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진우

별지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1. 동두천시 동
 [도로명 주소] 동두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
 1층 12.48m²
 2층 내지 5층 각 132m²
 옥탑1층 12.48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동두천시 대 983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 제5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9.76m²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 대지권 983분의 55.00

1)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확정되지는 아니하였다.